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9일,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7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7. 8.) 상정

제428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8. 26.)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6.) 상정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7.) 상정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위성곤의원)

동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사무기구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그러나 동법에서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상설조직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제도개선 과제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개정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에 기여하려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제주특별법」에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었고, 현재는 유효기간의 경과로 제18조의2 규정은 효력이 없는 상황임.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4개의 특별자치시·도를 지원하는 한시기구인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상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두고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사무기구 설치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구법의 부칙을 삭제한다고 하여 이미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의 효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같은 취지의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제주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하나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무기구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